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다만 상사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5년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권리를 오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한다.

채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일정한 물건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이를 채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①오랜 기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다른 사람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러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②오랜 기간동안 권리자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운 바,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③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 할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

◆원칙적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상사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5년이다.

◆ 3년의 소멸시효기간

①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정기적인 채권, 예를 들면 월급 등

②의사 · 조산원 ·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위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소멸시효 기간

①여관 · 음식점 · 대석 · 오락장의 숙박료 · 음식료 · 대석료 · 입장료와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의복 · 침구 ·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노역인 ·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 교사의 채권 등

◆소멸시효의 진행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이행기간이 도래된 때로부터 진행하나, 기한이 정해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조건부채권인 때에는 그 조건이 달성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것이 원래 위에서 설명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송의 제기 이외에도 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로써도 시효는 중단되나, 이 때에는 그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부인권이 생기고 이 권리부인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양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

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양자의 차이

①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법률관계로 하여서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당사자의 입장곤란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한편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단사자의 입장곤란을 구제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척 간에는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면 그 효력은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례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③ 소송상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데 비하여,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써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시초인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는 그것으로써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완전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비하여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것이 없다.

⑤ 소멸시효기간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⑥ 소멸시효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이를 자유로이 단축시킬 수 없다.

⑦ 법률에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

이 소멸시효기간인가 제척기간인가를 무엇을 표준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없을 때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시효제도의 취지나 그 효력 등에 ‘시효’라는 문자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의 뜻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마는데 이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이른바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로서 들고 있는 것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치분 및 승인 등이다.

①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며,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고, 다만 소의 각하, 기각·취하가 있더라도 6월

내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최고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 등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

②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자를 잃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위와 같은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에 한하지 않으며 취득시효에 관하여서도 있게 된다.

◆시효의 정지와의 차이

시효의 중단과 유사한 것으로 시효의 정지가 있는데, 이는 시효의 중단과 달리 그 시효기간이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